

◎ 규정 등 관리규정

제정 2012. 1. 17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규정과 규칙(이하 “규정 등”이라 한다)의 제·개정,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규정”은 본회 규약에서 위임된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규칙”은 규정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규정 이외의 본회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말한다.

제 3 조(효력의 순위) ① 규정 등은 관계법령, 경상북도자치법규 또는 본회규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동 순위의 규정 등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.

제 2 장 제정 및 개폐

제 4 조(제정형식)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목 차
2. 목 적
3.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
4. 적용범위
5. 각 조문의 명칭
6. 시행일자

②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·절·조·항·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,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2.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.
3.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.
4.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.

제 5 조(입안) 입안시에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·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6 조(절차) 규정 등의 제·개정,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로서 제·개정, 폐지한다.
2. 규칙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 7 조(효력발생) 규정은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발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8 조(소급금지)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규정안 작성서식

제 목

(주) 제목작성 예시

- 제정의 경우 : ○○○ 규정안
- 전문개정 경우 : ○○○ 규정개정규정안
- 일부개정 경우 : ○○○ 규정중 개정규정안
- 전부개정 경우 : ○○○ 규정중 전부개정규정안
- 폐지의 경우 : ○○○ 규정폐지규정안

1. 제·개정, 폐지 이유

- 포괄적으로 제·개정(전부), 폐지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기재한다.

2. 주요골자

- 제·개정(전부), 폐지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가.
나.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안근거
- 나. 예산조치
- 다. 합의
- 라. 절차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
- 마. 기타 참고사항